제89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(해양수산부)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확대(강화) ㅇ 오·남용으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취제, 호르몬제, 항생·항균제 전체를 처방대상으로 지정 ㅇ 전문지식이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, 구충제를 처방대상으로 지정 ▶(해양수산부)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	1.비중요
2	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강화) ㅇ 15개 어종, 17개 업종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 재설정 ▶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2조, 제3조	1.비중요
3	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 – 수급조절 기간 연장(신설) ㅇ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84호의 시행기간 종료일을 연장(5개월, '23.7.31.→' 23.12.31) ▶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전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조종사 · 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· 시행 의무 구체화(신설) ㅇ 건강증진활동계획에 포함할 내용, 전담조직 운영, 이행실적 점검 등 ▶ 조종사 · 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	1.비중요
5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임시검사 대상 차량 신설(신설) ㅇ 천재지변, 화재,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* 소유자에게 임시검사를 받도록 함 * ① 화재 또는 침수로 별표21의4에 따른 부품을 정비한 자동차, ② 천재지변, 화재 또는 침수로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 ▶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	1.중요
6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(강화) ㅇ 소득을 조정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하여 이를 공단에 신고한 경우,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토록 하고,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 이것이 밝혀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무효이므로,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부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▶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구조안전성 구조검토자료 제출 (신설) ㅇ「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」 개정에 따라 지진 등에 의한 슬로싱(Sloshing)현상 발생 시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성 확인 규정 도입 ▶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	1.비중요